

전면 재조정 계획

정부, 관세감면 대상품
단계적 조정방침 세워

정부는 △첨단기술산업 및 방위산업기자재 △산업기술연구개발용품 △공장자동화물품 △환경오염방지 및 산업재해예방 물품 등 관세감면 대상물품을 전면 재조정하기 위해 관세감면대상물품 개편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財政經濟院이 마련한 이 추진 계획(일정)은 업계가 특정물품에 대해 올해 또는 내년부터 새로 관세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에 지정신청을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오는 4월에 산업 기술 연구개발 용품의 관세감면 대상을 조정할 계획이다.

연구개발용품의 관세감면 대상물품은 과학기술처(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한 수요조사를 근거로 지정되는데 올 4월이후 특정 물품에 대해 관세감면혜택을 희망하는 업체는 늦어도 2월까지 과기처에 통보해야 한다.

재경원은 이어 오는 6월에 환경부·통상산업부·노동부의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각 환경오염방지 및 재활용용품, 산업재해 및 직업병예방물품 분야의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재지정할 계획이다.

또 올 11~12월에 첨단기술산

관세감면 대상물품 조정계획

분야별 (감면율)	현행 대상 품 목록	개편추진일정	
		수요조사(기관)	시 행
첨단기술산업 및 방위산업(30%)	7개산업 150개업종 340개품목	2월말(통산부)	95. 11월
공장자동화용 물품 (40%)	361개품목	4~5월(통산부)	95. 11월
산업기술연구개발 용품(80%)	241개품목	2월초(과기처)	95. 4월
환경오염방지 및 재활용용품(50%)	88개품목	4월말(통산부, 환 경부)	95. 6월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용품(50%)	59개품목	4월말(노동부)	95. 6월

업 및 방위산업용품,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감면물품을 재 조정 하되 첨단기술산업과 방위산업용품은 올 2월말까지 수요조사(통상산업부)를 마치고 공장자동화 물품 역시 올 4~5월까지 수요조사를 완료할 계획이어서 관세감면물품 지정을 원하는 기업은 이 달 또는 5월까지 신청을 끝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工基盤사업 支援
體制 전면 改編
通產部,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용요령 개정 고시**

정부의 공업기반기술개발 지원체제가 경쟁위주의 성과제고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됐다.

통상산업부는 그동안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이 감사에 대비한 관리위주로 운영돼 우수한 기술개발과제를 발굴하기가 어려웠으며 참여기관도 연구개발보다는 행정절차에 치중하게 되는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을 이같이 개정, 1월 16일자로 고시했다.

통산부는 이날 고시된 운영요령에서 향후 기술개발사업은 연

구개발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기술개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기술수요조사에 의한 현행 과제도출방식을 산학연 기술교류회를 통한 분야 도출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 지금까지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과제에 대한 지원율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유사한 과제에서 서로 다른 기관이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복수기관을 지정, 상호간의 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통신부는 이같은 경쟁방식이 도입되기 전에는 과제도출시의 경쟁이 15대1에 불과했으나 앞으로는 최소한 5대1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 종전에는 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주관기관의 자격을 대학·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연구조합 등으로 제한했으나 이같은 제한을 폐지, 실질적인 연구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절차에 미숙한 영세사업자와 소규모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유응모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자유응모과제는 수도권지역 이외의 지방 중소기업을 주대상으로 실시, 기술개발사업을 지방으로 확대하는 한편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되는 문제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연구기관이 필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정액기술료외에 경상기술료를 획득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 연구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도 최대한 보장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기술료징수를 위한 활용도 평가절차 생략등 사후관리절차를 간소화하되 기술개발사업 협약단계에서부터 기술료징수 과정과 미징수과제로 구분해 정수과제에 대해서는 약속어음 정구등 담보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성과제고 차원의 사후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전문개정 요지

구 분	현 행	개 정
• 기본이념	• 감사위주 실적관리 시스템	• 경쟁위주 성과제고 시스템
• 경쟁유도 체계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조사의 과제도출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율 : 15:1 • 중복지원 방지로 유사과제 지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연 기술교류회」를 통한 지원분야 도출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정안 제7조 제2항) - 경쟁율(예상) : 5:1이상 • 유사한 과제에 대하여도 동일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복수의 기관을 선정하여 경쟁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정안 제18조 제3항)
• 기술개발진입 제한 철폐		
- 주관기관 자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연구소·기업부설 연구소·연구조합등 6개분류에 한정 • 자유형태 참여보장 • 지방확산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제한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정안 제11조 제2항) - 부설 연구소가 없는 기업, 학회·협회 등 형태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연구능력이 있으면 참여가능 - 실질적인 연구개발능력 인정 평가 • 자유응모과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정안 제14조 제4항) - 절차에 무지한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자 등에게도 동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수도권 이외의 지방중소기업 위주로 운영
• 엄정한 평가 체계 확립		
- 경쟁평가 체계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중심의 외부전문가 100%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전문가와 관리기관의 공동평가로 상호 경쟁적 평가체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기관 평가비율(20% 수준)

구 분	현 행	개 정
- 객관적·중립적 평가체계 운영 - 평가사업의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기술성 통합평가 • 최종평가시 우수·보통·불량으로 3단계 평가 - 보통평가 : 2/3 수준 • 외국인 전문가 초청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 및 기술성의 별도 분리 평가 • 기술적인 성공, 실패의 2단계를 평가(개정안 제29조 제6항)
• 연구개발의 자율성 보장 - 연구비의 탄력적 활용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시 사용비목간 제한 - 직접연구비·간접연구비 등 5개 항목별 사용용도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비 사용비목간 제한 대폭 완화(개정안 제19조) • 연구비 항목에 대한 개념 규정 만 두고 구체적 세부 비목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운용 가능도록 연구자가 필요에 따라 연구비를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
-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장	• 정액기술료만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성과의 자율적 활용을 위한 경상기술료 징수 근거 마련(개정안 제32조 제4항) • 주관기관과 실시기업간 자율적 으로 협약
• 사후관리 간소화 - 활용도 평가 절차 생략 - 기술료징수 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용도 평가에 따른 기술료 징수 절차 개시 • 기술료 날부에 대해 사후관리 측면에서 사후에 징수여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평가시 기술적 성공평가에 따라 기술료 징수 절차 개시(개정안 제32조 제1항) • 협약단계에서부터 기술료 징수과제와 미징수과제로 구분(개정안 제6조 제2항) - 징수과제의 경우 협약단계에서 약속이음등 담보장치 마련

과학기술 장교제도 검토

科技處, 기술중재도 추진

과기처는 국가 주요 과학기술 분야의 석사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전문장교(가칭)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각종 기술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기술중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월 27일 발표했다.

과기처관계자는 연구조교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는 지방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요 과학기술분야의 석사과정생을 대학 연구조교와 군 전문연구원으로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전문장교는 박사과정생 중 교수의 추천으로 입영을 연기받아 연구를 하며 3년후 학위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군에 입대 해 일정기간 훈련을 받은뒤 국방

부에서 배정하는 기관에서 과학기술 전문장교로 12~14개월 근무하게 하려는 것이다.

과기처는 현재 이공계 출신 석사와 박사 또는 박사과정생에게 군이 지정하는 산업체에서 5년간 연구를 돋는 조건으로 병역특례를 주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산업체의 연구조건이 열악해 잘 운영되지 않아 과학기술 전문장교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처는 최근 기술관련 소송이 매년 1만4천건이나 제기되고 있으나 법관의 전문기술지식 부족으로 5천건만이 소송한 해에 해결되는 실정을 감안해 기술분쟁중재제도를 도입, 기술중재원(가칭)을 설립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과기처는 기술분쟁중재기구를 한국기술사회 부설기관 형태로 출발시켜 독립기구화하고 일정자격의 중재인을 풀로 구성해 사안별로 3~5인의 중재판정부를 구성, 운영하며 중재판정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할 계획이다.

세계 20위 이내 목표

97년까지 기초과학진흥 과기처 올 업무보고

과기처는 과학기술 부문의 일

류화·세계화 시책을 촉진, 세계 경영의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선도기술개발사업(G7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며 '핵심엔지니어링기술진흥 종장기계획'·'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鄭根謨과기처장관은 청와대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세계화 실천 원년을 맞아 과학기술연구 개발 활동의 합리성·전문성·자율성 및 국제성의 새로운 기조를 착실하게 정착시켜 과학기술이 다른 부문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한편 과학기술부문 자체의 대대적인 개혁으로 세계속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金泳三대통령에게 보고했다.

鄭장관은 지난 92년부터 범부처적으로 추진해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 선도기술개발사업에 올해 3천9백72억원을 투입해 10여 종의 신소재 시제품개발을 완료하고 시속 1백20km급 전기자동차 모델을 완성하는 등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등으로 무한경쟁과 개방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첨단기술개발·활용에서 소홀히 한 엔지니어링기술을 중점 개발하기 위해 '핵심엔지니어링기술진흥 종장기

계획(95~2005)'을 상반기에 확정하고 기초기술이 효율적으로 상품화될 수 있게 하는 중간진입전략을 적극 구사하며 21세기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생물소재분야 등 생명공학에 6백6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그는 항공우주기술분야에 오는 98년까지 1천9백90억원을 투입, 다목적 실용위성을 개발하고 소형 쌍발복합재료항공기를 개발해 광복50주년을 맞아 시범비행하는 등 첨단·원천의 항공우주기술개발을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초과학연구진흥 종합계획'을 수립, 세계 29위권에 머물고 있는 기초과학 수준을 오는 97년까지 세계 20위권으로 옮리겠다고 보고했다.

鄭장관은 경수로 지원을 통해 남북원자력협력의 계기가 조성될 경우에 대비, 북한 기술인력의 훈련·전문가의 상호파견·공동연구의 추진등을 위한 '남북원자력협력기본합의서'의 채택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남북과학기술실무협의회구성과 남북과학기술조사단의 상호교환방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학기술협력외교를 한층 강화해 APEC(아·태경제협의체) 과학기술각료회의를 96년 상반기중 서울에서 개최토록 추진, 세계속에서 우리의 위상을

제고하며 연내에 러시아·중국·호주 등에 8개소의 현지 공동연구센터를 추가 설립하고 출연기관의 해외통합사무소를 러시아와 유럽지역으로 확대해 개발단계의 선진기술과 정보를 시차없이 습득·활용할 계획이다.

과기처는 이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관련사업을 빠르고 일관성있게 추진해 최고의 기술력으로 안전성이 보장된 처분장을 2001년까지 건설하고 지역주민 지원사업도 충실히 수행하며 정부출연기관을 국제경쟁 및 개방체제로 전환, 경쟁과 협력의 연구사업수행체제를 확립해 연구분위기를 혁신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기간교통망 재구성작업 착수 建交部, 실무작업반 구성

舊건설부와 교통부 등 각 교통관련 부처의 정책방향에 따라 전체적인 원칙없이 수립돼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이 연내에 전면 수정돼 재수립된다.

2월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철도, 항만, 공항, 도로 등 기간교통망은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내용이 종합돼오기는 했으나 건설부와 교통부, 철도청, 해운항만청 등으로 추진부서가 갈라져 각 교

통망별 우선순위의 조정, 포괄적인 국토계획과의 조화 측면에서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지적돼왔다.

실무작업반은 특히 세계화, 지방화 추세에 발맞추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영종도 신국제공항에는 이미 계획된 공항과 배후 지원단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시설을 갖춰 세계의 중심공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부, 호남고속철도를 북측과 연결해 중국, 러시아를 통해 유럽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항공 자체 검사수임 항공기 중앙동체부분에

공업진흥청은 대한항공을 항공우주산업 검사수임업체로 최초 지정했다. 현재 항공기 관련제품의 검사는 공업진흥청이 관장하며 직접적인 검사는 전문 검사기관인 항공우주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2월 16일 검사실적이 우수하고 자체 검사능력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항공우주산업 검사수임업체 지정요령이 공포시행되어 공업진흥청장이 안전과 관련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품목을 제외하고 자

사 생산품의 일부를 자체검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번에 제일 차로 대한항공에 자체검사 자격을 부여한 것이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A330 및 A340 여객기 동체의 Section 15, Forward Upper Shell에 대해 자체 검사만으로 원제작사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보세공장 지정 항공기 · 부품제조업에

지난 '94.12.31, 국무총리령 제408호에 의거 현행 10개 업종에 적용하고 있는 내수용 보세공장 운영제도에 항공기 및 부분품제조업을 신설, 지정하였다.

동 제도는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통상산업부에 '94년 11월, 건의하여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항공기 및 항공기 부분품(HS 88류)은 무세이나 88류 이외의 구성부품은 5~8% 관세율 적용으로 역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고 관세감면 신청시 세부품 별 세율적용으로 인하여 자료작성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항공기에 소용되는 물품은 타제품에 비하여 첨단 고가품으로 타용도에 전용되거나 필요 이상의 물품수입이 사실상 곤란

하여 사후관리 이행의 어려움이 이번조치로 개선되었다.

항공우주분야 20건

작년 기술도입신고급증 일본 줄고 미국 늘어

국내기업들이 신규업종 진출, 공장증설, 신제품개발 등을 위해 지난해 상공자원부(현 통상산업부)에 기술도입을 신고한 건수가 전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기 1백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기계 1백 68건, 섬유화학이 62건 등 의 순이었다.

기계중에는 자동차 부문이 52건, 항공우주 부문이 20건, 조선부문이 11건이었다.

통신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술도입신고의 특징적인 현상은 일본이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면서 미국쪽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이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